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9
------	------

2020. 9. 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9. 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 제안이유

-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6905호).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나. 한시기구의 현황과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제1항).
-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최장 6년)할 수 있음(제8조 제4항·5항)²⁾.

1)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을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한시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지역발전본부	2020.07.01~2021.06.30	서울의 성장 동력 육성과 신경제 중심지 조성
문화시설추진단	2020.08.19~2021.08.18	문화 향유권 회복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남북협력추진단	2018.11.01~2020.10.31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해 통일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민간·정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오는 10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남북협력추진단’ 은 2018년 11월에 한시기구로 신설된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매년 존속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음.

- “행정기구·정원규정” 은 시·도에서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3급 이상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제21조³⁾, 행정안전부는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음.

3)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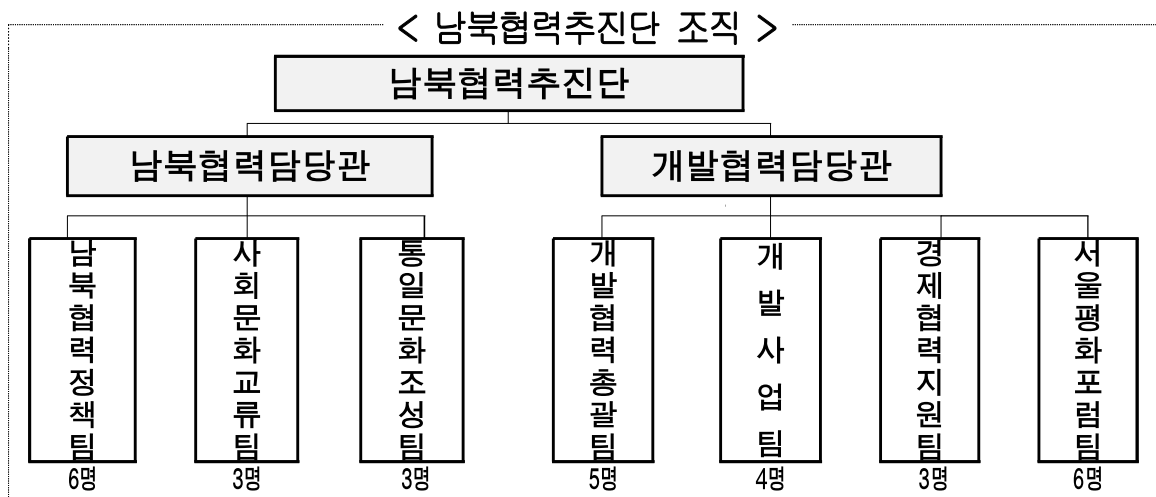
- 당초 서울시는 존속기한 2년 연장(2020.11.1~2022.10.31)을 요청하였으나 (2020.6.15),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기구조정계획’ 준수를 조건부로 1년만 존속기한 연장을 승인하였음(2020.7.23).[참고자료 1].
- 서울시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기구조정계획’ 은 3개 한시기구의 정규화 방안과 시장방침으로 운영되는 4개의 법외기구 (임시기구)에 대한 정비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한시기구는 관련성 있는 타 실·국의 산하 부서로 재편해 연차적으로 정규기구화한다는 계획임(지역발전본부 2021년, 문화시설추진단 2022년, 남북협력추진단 2023년).
 - 법외기구 중 국제협력관은 폐지하고(2023년), 그 밖에 기구는 연차별로 한시기구화한다는 계획임(재생정책기획관 2021년, 주택기획관 2022년, 환경에너지기획관 2023년).

< 서울시 법외기구 운영 현황 >

부서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주요업무
국제협력관	시장방침 (2013.12.02)	국제교류·협력 총괄·조정, 우수정책 해외교류 전략 수립,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 등
환경에너지 기획관	시장방침 (2011.11.29.)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차 보급 등 기후 환경본부장 보좌
재생정책 기획관	시장방침 (2012.09.28.)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실장 보좌
주택기획관	시장방침 (2011.11.29.)	주택공급 관리, 주거복지 사업 등 주택건축본부장 보좌

다.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

- 남북관계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경색 국면을 지속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1차 4월, 2차 5월, 3차 9월)이 개최되면서 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당시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되었음(2018년 11월).
- ‘남북협력추진단’은 현재 1단·2담당관·7팀(총 3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관리, ▶ 체육·문화·예술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 평화·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 인도적 지원과 도시 인프라 등 개발지원 협력, ▶ 산림·환경 협력 등 경제개발협력, ▶ 서울평화포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2019년 2월에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결렬 이후에 북미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들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제3국과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서울-평양 관광코스 개발, 보건의료 지원 등 북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남북관계는 북측의 국내 상황과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군사적 관계 등에 따라 급변할 여지가 있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이런 정세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남북협력추진단’의 지속성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정체된 남북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다원화된 남북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남북협력추진단’의 소관업무 특성상 한시기구로의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한시기구 설치와 연장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사실상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
-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한시조직 직급채정 협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의결한 바가 있으나(2019.8.23.)[참고자료 2],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지 못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9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시정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에서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부칙 제690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 7. 30.~8. 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90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0년 10월 31일”을 “2021년 10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제6905호, 2018. 10. 4.>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 제3항의 남북협력추진단의 존속기 한은 <u>2020년 10월 31일까지</u> 로 한 다.	부칙 <제6905호, 2018. 10. 4.>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 <u>2021년 10월 31일</u>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행정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김철묵(☎ 2133-6732)